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787

발의연월일: 2021. 7. 28.

발 의 자:김도읍・김태흠・윤한홍

태영호 • 권영세 • 이헌승

추경호 · 양금희 · 조수진

신원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유족 중 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고 「군인 재해보상법」에서도 동법의 유족의 기준을 준용하여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민법에 따른 미성년이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퇴직유족 급여 및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여러움을 겪고 있음.

이에 미성년 기준인 19세를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3조). 법률 제 호
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"19세"를 각각 "25세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"19세"를 "25세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19세"를 "25세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3조(정의) ① (생 략) | 제3조(정의) ① (현행과 같음) |
| 2 제 1 항제 4 목나목의 자녀는 1 | ② <u>2</u> |
| 9세 미만인 자녀와 「군인 재 | 5세 |
| 해보상법」제27조제1항에 따른 | |
| 상이연금의 등급(이하 "상이등 | |
| 급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장해 | |
| (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| |
| 장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| |
| 있는 <u>19세</u> 이상인 자녀로 한정 | <u>2</u> 5세 |
| 한다. | |
| ③ 제1항제4호라목의 손자녀는 | ③ |
|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상 | |
| 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 | |
| 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 | |
| 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자녀로 | |
| 한정한다. | |
| 1. <u>19세</u> 미만인 손자녀 | 1. <u>25세</u> |
| 2.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| 2 |
| 있는 <u>19세</u> 이상인 손자녀 | <u>25세</u> |
| ④ (생 략) | ④ (현행과 같음) |